#### 포스포올 (FOSS for All)

# 운영위원회 의사록

개요	1
안건	1
의장 및 운영위원 서명	2

## 개요

- 일시: 2025년 3월 16일 오전 10시 06분 (UTC+9) (의결 완료 일시)
  - 안건 제안 및 심의 기간: 2025년 3월 9일 3월 14일
  - 안건 투표 및 의결 기간: 2025년 3월 15일 3월 16일
- 정관 제31조에 근거하여 전자통신매체로 안건 논의 및 의결 진행
  - o Discord 서버의 운영위원회 채팅방에서 안건 제안 및 논의
  - 이후, Discord 의 투표 기능 활용하여 각 안건 투표 및 의결
- 참여인원: 운영위원회 구성원 4인 전원 한영빈, 조성수, 문성준, 유현아
- 작성(서기): 한영빈

## 안건

## 1. 회비규정 제정 심의(안)

붙임1 과 같이 회비규정을 제정 할 것을 제안함.

### 결과

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

## 2. 회비 금액 산정(안)

정기회비는 분기별 3만원으로 정할 것을 제안함.

### 결과

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

## 3. 운영위원 보통재산 출연(안)

운영위원의 경우 각자 7만원식 단체의 보통재산으로 출연하고,

이를 분기별 회비 3만원 1회분과 함께 선납 할것을 제안함. (총 10만원 선납)

#### 결과

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

### 4. 단체 자금 임시 계좌 개설(안)

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단체 자금 임시 계좌 개설을 재안함

- 대표 명의의 모임통장(토스뱅크 모임통장,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등등) 개설하여 회비 등에서 발생한 단체 자금 관리.
- 모든 운영위원이 모임통장 거래내역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, 단체 명의 계좌를 이르면 3월 안으로 늦어도
  4월 안으로 개설하여 단체 명의 계좌로 자금을 모두 이전하는 조건.

#### 결과

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

## 5. 주사무소 선정(안)

단체의 주사무소로 개러지 당산점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) 으로 할 것을 제안함.

주사무소 계약은 12개월로 하고 임차료는 일시납부 할 것을 제안하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선납한 보통재산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함.

### 결과

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

## 의장 및 운영위원 서명

위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, 의장과 참석 운영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다.

2025년 3월 16일

#### 포스포올

의장(대표) 한영빈	운영위원 조성수	운영위원 문성준	운영위원 유현아
Therese	RUL John	Mg F 1	grading!

## 회비규정

#### 2025년 03월 16일 제정

#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포스포올(이하 "단체"라 한다)의 정관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비 등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.

### 제3조 (회비의 종류)

본 규정에서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정기회비: 모든 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이며, 분기별로 부과된다.

### 제4조 (회비금액과 납부시기)

- ① 정기회비 납부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한다.
- ② 정기회비는 각 분기의 첫 번째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하며, 희망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 까지 남은 금액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.

## 제5조 (납부방법)

회비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- 1. 계좌이체
- 2. 단체가 정한 전자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
- 3.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정하는 방법을 통한 납부

## 제6조 (회비의 화불)

납부된 회비는 워칙적으로 환불 받을 수 없다. 단,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다.

-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단체를 자진 탈퇴하는 경우, 탈퇴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. 단, 탈퇴 시점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다.
- 2. 그 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.

## 제7조 (보고)

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전년도의 회비징수 실적현황과 회비납부자 명단 및 회원 현황을 모든 참석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8조 (기타사항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 상 모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## 제9조 (개정 또는 폐지)

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